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단337444(본소), 2019가단33745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민호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변론 종결 2022. 1. 13.

판결 선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가. 부산 동구 C 대 430m² 중 별지 도면1) 표시 15, 16, 23, 22,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m² 지상의 블록조 슬라브 창고 및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높이 2.2m 블록 담장을 각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m² 및 별지 도면 표시 15, 16, 23, 22,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m² 및 별지 도면 표시 3, 4, 20, 19, 18, 8, 17, 23,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m²를 각 인도하고,
 - 나. 2,917,200원 및 그 중 2,727,735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터, 나머지 189,465원에 대하여는 2021. 10. 8.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다. 2021. 10. 27.부터 위 가.항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2,917,2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게 부산 동구 C 대 430m² 중 별지 도면2) 표시 13, 14, 15, 16, 17, 8, 18, 19, 20, 4, 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m²에 관하여 2019. 7.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부산 동구 C 대 4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1977. 6. 15. D 명의로, 1999. 7. 14. E 명의로, 2015. 10. 30. F 명의로, 2017. 10. 27. 원고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1975. 11. 17.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G 대 245m²를 취득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 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가.항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ㄷ)부분 5m² 지상에 피고

소유의 창고 및 길이 2.2m의 피고 소유의 담장이 각 설치되어 있고, (ㄴ)부분 7m², (ㄷ)부분 5m², (ㄹ)부분 10m², 합계 22m²{이는 반소청구취지의 'ㄴ'부분 22m²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함}가 피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라.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임료는 2017. 10. 27.부터 2019. 10. 26.까지는 연간 1,359,600원이고, 2019. 10. 27.부터 2020. 10. 26.까지는 연간 1,557,600원(월간 130,000원3))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가.항에 표시된 (ㄷ)부분 5m² 지상의 창고 및 길이 2.2m의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0. 27.부터 2021. 10. 26.까지의 임료 합계금 2,917,200원(1,359,600원 + 1,557,600원)과 그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및 그 이후부터 인도일까지 월 1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 위 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2017. 10. 27.부터 2021. 10. 26.까지의 임료가 2,917,2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그 중 이 사건 소장(2019. 17. 10. 27.부터 2019. 2019. 10. 28.까지의 임료로 4,566,100원을 청구하고 있음)에서 청구한 2019. 10. 28.까지의 임료는 2,727,735원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189,465원은 2019. 10. 29. 이후의 임료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917,200원 및 그 중 2,727,735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나머지 189,465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금액을 특정하여 최초로 청구한 2021.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8.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함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겸 본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75. 11. 17. 부산 동구 G 대 245㎡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위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11.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99. 7. 14. E 명의로 변동되었으므로 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2차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진행되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9. 7. 14.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2019. 7.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주장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 2019. 7. 14. 이전에 원고의 청구로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이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 최고 시점에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하여 현황측량을 수행한 후에 2017. 12.경 이 사건 침범 부분이 피고의 주택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성과도를 보고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5.경 피고에게 위 침범 사실을 알리면서 침범 부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9. 10.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점유취득시효는 그 완성일(2019. 7. 14.) 이전인 2019. 5.경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규현

별지